

14.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중개정령

노동부령 제144호 1999. 2. 23

개정이유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수요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술자격의 등급을 조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이 개정(1998. 5. 9, 대통령령 제15794호)됨에 따라 조정된 기술자격의 등급에 따라 시험과목을 조정하고 기술사응시자격에 있어서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며,

기능사·산업기사의 검정에 있어서 실기능력이 중요시되는 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을 면제하거나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적시에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자격검정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격검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국가기술자격중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기술사검정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사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종사한 실무경력 외에 그와 유사한 직무분야에서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때에도 기술사 응시 자격을 인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술사 검정에 있어 실무경력이 인정되는 유사 직무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함(제2조의11제1항 및 별표 1의3 신설).
- 나. 기능사 검정에 있어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론보다 실기능력이 중요시되는 도로포장·석공 등의 종목

은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함(제4조의4제1항 및 별표 3의2 신설).

- 다. 산업기사의 검정에 있어서 실기능력이 중요시되는 종목의 경우는 필기시험을 과목별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과목을 혼합하여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이론 보다 실기능력이 중요시되는 기계조립·보일러 등의 종목은 필기시험 전과목을 혼합하여 실시하도록 함(제4조의7 및 별표 3의3 신설).
- 라. 종전에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 기술사, 기사 1급, 기사 2급, 다기능기술자, 기능장,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개편됨에 따라 기술자격 등급에 맞추어 기술자격 등급별 시험과목을 조정함(제5조 및 별표 4).
- 마.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검정시 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합격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양성된 해당 종 목 기술인력의 100분의 30 또는 최근 3회차의 평균 응시인원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인원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도록 함(제13조의2제2항 신설).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중 “교육법”을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 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등”으로 하며, 동조제3호 본문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호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4호중 “10분의 5이상을 마친 자”를 “10분의 5를 초과하여 이 수증인 자”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상시검정”이라 함은 정기검정 및 수시검정외의 검정으로서 연중 계속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제2조의10을 제2조의11로 하고, 제2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0(기술자격의 종목신설) 주무부장관은 영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통합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국가기술자격종목신설등검토의견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11(종전의 제2조의10)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동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동조제2항(종전의제1항)중 “영 별표 4 및 영 별표 5”를 “영 별표 4의 기술사 응시자격란 제7호”로,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별표 1의3의 기사 2급 또는 기능사 1급”을 “별표 1의4의 산업기사”로 한다.

①영 별표 4의 기술사 응시자격란 제1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라 함은 별표 1의3의 직무분야를 말한다.

제3조중 “서비스계”를 “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실기시험 검정방법의 예외 등) ①영 별표 7의2제2호가목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종목”이라 함은 별표 3의 기술자격종목을 말한다.

②영 별표 7의2제2호나목(1)(다)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라 함은 별표 1의4의 기술훈련

과정을 말한다.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실기시험 성적평가) ①영 별표 7의2제2호나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평가한 성적을 기능사검정의 실기시험 성적으로 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당해 응시자가 선택하는 1종목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시기는 당해 학교의 현장실습계획에 의한 당해 종목 실습과정의 10분의 7이상을 이수한 후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응시자에 대한 성적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1. 실업계 고등학교의 장은 평가예정일의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검정시험문제교부요청서에 의하여 공단에 시험문제의 교부를 요청하고, 공단은 평가예정일의 20일전까지 이를 교부한다.

2. 실업계 고등학교의 장은 교부받은 문제로 응시자 1인당 1회의 평가를 실시한 후 7일이내에 그 시험문제에 따라 실시한 평가내용과 교부된 시험문제지를 공단에 제출한다.

3. 공단은 제출받은 평가내용을 채점하여 그 성적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장은 소속직원이 아닌 자중에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제11조·제12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시험위원”은 “평가위원”으로 본다.

제4조의3(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에 대한 검정의 면제) 영 별표 7의2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는 당해 기술자격검정의 출제기준과 기능경기대회의 입상종목 또는 명장종목의 선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능경기대회의 입상종목 또는 명장종목의 선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종목 또는 명장으로 선정된 종목과 동일한 기술자격종목(동일한 기술자격종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기술자격종목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종목)에 한한다.

제4조의4(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면제)

①영 별표 7의2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기술자격의 종목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술훈련

과정에서 이수한 기술자격의 종목. 다만, 당해 과정의 10분의 7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가. 실업계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포함한다)의 기술훈련과정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그 훈련기간이 1년이상인 기능사 수준의 과정

다.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기술계학원의 직업훈련 기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외의 직업훈련중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과정에 준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과정

라. 해양수산계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파전자기능사의 기술훈련과정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응시자가 선택한 1종목의 기술자격의 필기시험을 면제하되, 면제기간은 당해 과정을 마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4조의5(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 기술자격의 검정방법) 영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 기술자격의 검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산 · 한글속기 및 영문속기 : 실기시험
2. 부기 : 필기시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술자격종목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다만, 비서종목의 경우에는 한글속기 · 영문속기 ·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중 1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의6(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연속실시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방법) 영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한 경우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 답안지를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제4조의7(산업기사 필기시험의 예외) 영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전과목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산업기사 종목은 별표 3의3과 같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검정의 시험과목)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종목별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상시검정의 시행) 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기술자격자의 배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중 계속하여 실시하는 상시검정의 시

행절차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9조제1항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및 본문중 “서비스계기술자격”을 각각 “서비스분야종사업서비스 기술자격”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합격인원 예정선발) ①주무부장관은 영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국가기술자격합격인원예정선발협의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험일 6월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합격인원 예정선발의 필요성
 2. 종목별 기술인력의 수급상황(양성상황 및 부족실태를 포함한다)
 3. 합격예정 인원
 4. 해당 종목의 검정실적
 5. 해당 종목 기술인력의 고용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
 6. 검정의 시행시기
-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격예정 인원을 정함에 있어서 최근 1년간 양성된 해당 종목 기술인력의 100

분의 30 또는 최근 3회차의 평균 응시인원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검정의 필기시험이 끝나면 해당 종목 응시자의 기술능력수준 및 합격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당해 시험의 합격점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외국자격취득자의 검정과목 면

제) 영 제26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기술자격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16조 중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영 제2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기술자격증)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전파통신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전파통신기능사·전파전자기사·전파전자산업기사 및 전파전자기능사의 기술자격증은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제외 대상자에 대한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본문중 “기술자격수첩”을 각각 “기술자격증”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및 본문중 “기술자격수첩”을 각각 “기술자격증”으로 하고, 동조중 “영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하여”를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변동에 관하여”로 한다.

제26조제2항 단서중 “기술분야”를 “직무분야”로, “자격수첩 사본”을 “기술자격증 사본”으로 한다.

제27조 중 “현역군인·방위병”을 “현역군인”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검정시행결과의 통보) 주무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이 검정을 시행한 때에는 검정시행결과를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노동부장관(기술사 등급에 대한 검정시행결과에 한한다) 및 위탁기관(수탁기관이 검정을 시행한 경우에 한한다)에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 제목 및 제1항 본문중 “서비스계”를 각각 “서비스분야증 사업서비스”로 한다.

별표 1의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의2 및 별표 3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 기준란 제1호다목·라목, 제2호나목, 제3호나목, 제4호가목 및 비고란중 “자격수첩”을 각각 “기술자격증”으로, 동표 중 대상종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종목	당해 자격종목
------	---------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2호의4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내지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11, 제2조의12, 제3조, 제4조, 제4조의4, 제4조의5, 제4조의7, 제5조, 제13조, 제27조, 제30조,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2,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3의3, 별표 4·별표 4의2(별표 4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중 전파전자기능사의 시험과목을 제외한다.), 별표 4의3, 별표4의4, 별표 5, 별표 6, 별표 8,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실기시험 검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자격종목중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실기시험에 갈음할 수 있는 종목은 1999년 3월 27일까지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종목				
	기술계		기능계		
	기술분야	기사1급	기사 2급	기능장	기능사1급
기계	일반기계 · 공조냉동기계 · 건설기계 · 철도차량 · 농업기계 · 용접	일반기계 · 공조냉동기계 · 건설기계 · 철도차량 · 계량물리 · 농업기계 · 용접 · 유통관리	기계가공 · 금형제작 · 기계정비 · 판금제판 · 배관 · 용접 ·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	보일러 · 열차조작 · 기계전자 · 시스템제어 · 전산용용기	보일러시공 · 열차조작
금속	금속 · 비파괴검사	금속 ·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 주조 · 도금 · 압연 · 제선 · 제강	금속재료 · 도금	금속재료시험 · 열처리 · 전기도금
화공및요업	화공공업화학 · 화약류제조 · 요업	공업화학 · 화약류제조 · 요업	위험물취급	위험물취급	위험물취급
전기	전기 · 전기공사	전기 · 전기공사	전기기기 ·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통신	정보통신설비 · 유선설비 · 무선설비	정보통신설비 · 유선설비	통신설비		
조선	조선 · 선박기계	조선 · 선박기계			
항공	항공	항공	항공정비		항공기관정비

자격종목 및 등급 기술분야	자 격 종 목				
	기 술 계		기 능 계		
	기사1급	기사 2급	기능장	기능사1급	기능사2급 (또는 기능사)
토 목	토목 · 건설재 료시험 · 철도 보선	건설재료시험 · 철도보선		측량 · 보선 · 건설재료	측량 · 보선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포장
건 축	건축 · 건축설 비 · 의장	건축설비 · 의장			
섬 유	방직 · 염색가 공 · 방사 · 의류	방직 · 염색가 공 · 방사 · 생 사 · 의류	염색		
광업자원	광산 · 광산보 안 · 시추 · 석재 · 화약 류관리	광산 · 광산보 안 · 시추 · 석재 · 화약 류관리			광산보안 (채광 · 기계 · 전기) · 화 약취급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 직응용 · 정보 처리	전자계산기조 직응용 · 정보 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국토개발	측지 · 지적	측지 · 지적			
농 립	종자 · 산림경 영 · 임산가공 · 축산 · 식품 제조 · 임업종 묘 · 농화학 · 산림공학 · 시 설원예 · 식물 보호,	종자 · 산림경 영 · 임산가공 · 축산 · 식품 제조 · 임업종 묘 · 산림공학 · 시설원예 · 식물보호		임산가공	

자격종목 및 등급 기술분야	자격종목				
	기술계		기능계		
	기사1급	기사2급	기능장	기능사1급	기능사2급 (또는 기능사)
해양	해양조사·수산양식·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어로·어병방역·수산제조·해양생산관리	해양조사·수산양식·어로·수산제조			
에너지	원자력·열관리	열관리			
안전관리	산업안전·건설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가스	산업안전·건설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가스	고압가스	고압가스	고압가스
환경	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	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			유독물취급
산업응용	공정관리·품질관리·포장·광학·응용지질·승강기·생물공학	공정관리·품질관리·포장·승강기			
교통	교통	교통			

※ 별표 및 별지는 다음호에 게재할 예정임.

주택회보